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3월 5일, 박성훈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5년 3월 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 4. 2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 3. 24.) 상정, 축조심사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 4. 14.)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 4. 23.)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성훈 의원)

현행법은 술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이미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대한 단순 표시사항 위반 행위 등을 중대한 범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품질인증제도의 취지가 술의 품질 향상 및 고품질 술 생산 장려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벌칙 부과 전 시정을 명하여 개선할 기회를 줌으로써 전통주 생산 소상공인의 위험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인증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우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단순 실수로 인한 과도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최용훈 수석전문위원)

- ☐ 현행법은 술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실시하고, 인증 내용과 다르게 표시·광고 시 형벌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술’에 인증표시를 하는 등의 행위와 달리, ‘이미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대한 단순 표시사항 위반 등은 행정상 의무위반으로 중대한 범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품질인증 제도의 본래 취지가 술의 품질 향상 및 고품질 전통주 생산 장려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전통주 생산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과도한 형벌적용으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 ☐ 따라서 형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위법성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조치를 먼저 시행한 후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준병)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